



특허청

지식 재산 등록청(특허청)은 지식 재산권 등록청입니다.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과 장 전 현 진 042-481-5460 사무관 박 성 철 042-481-5716
	2018년 1월 15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월 14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

-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난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에 게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창출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의 연차등록료*는 절반만 납부하도록 개편하여,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 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건인차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 4년차부터 권리유지를 위해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등록료

<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기술 혁신 활동에 따른 특허 수수료 등 지원 체계(안) >

[특허 창출 단계]				[특허 유지 단계]
출원	→	심사청구	→	설정 등록(1~3년) → 등록 유지(4년~20년)
(현행)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설정등록료 70% 감면			4~9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지원 확대)	특허 창출활동에 대한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도입			4~20년차 연차등록료 50%감면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향후 다른 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 (특허 창출 활동 관련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인센티브 부여(안) >

납부금액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인센티브 비율	10%	20%	30%	40%	50%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 제도 또한 대폭 확대된다.

* 개인(출원인과 발명자 등이 같은 경우),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등은 특허등록 이후 9년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감면*받았으나,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 등록 후 쉰 기간 동안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 (현행)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9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 (개정안)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20년차 연차등록료 50% 감면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핵심 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이 특허 1건당 보유한 청구항(발명의 보호범위)수가 6개인 경우

이와 함께,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년~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해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과 지식재산 경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4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 특허 등록료 감면제도 현황 및 개정안 】

등록후 납부기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설정 등록료	1~3년차	(현행) 중소기업·개인(70%),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 전담조직 포함)·지방자치단체(50%), 중견기업(30%)
연차 등록료	4~9년차	(현행) 중소기업·개인·공공연구기관·중견기업(30%) (개정안) 중소기업·개인·공공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50%)·중견기업(30%)
	10~20년차	(현행) 감면제도 없음 (개정안) 중소기업·개인·공공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50%)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은 4~6년차 연차등록료 20%추가 감면

이번 개정안은 1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를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붙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조문별 제·개정 내용

붙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계획

1. 개정 배경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 등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출원인 등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 등 반영

2. 주요 내용

- **(4년차 이후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등록료의 감면기간을 **존속기간까지 50% 감면으로 확대** (안 제7조)
 - * (현행)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9년차 연차등록료 30%
 - (개정)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존속기간까지 연차등록료 50%
 - * 감면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감면은 현행 제도를 유지
- **(‘특허키움 리워드’ 도입 근거 마련)** 중소기업의 특허창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특허기술 혁신을 촉진 (안 제7조의2)
 - *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의 총 납부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납부금액의 10%~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다른 수수료 납부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수수료 지원 시책으로 도입한 특허료 등의 추가 20%감면 혜택을 연장**(안제7조)
 - * 4차 산업혁명의 지식재산정책방향(‘17.11)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률 제고와 지식재산 경영 확산을 위해 추가감면 혜택 유효기간을 2022. 2.28.까지로 연장
- **(출원인 등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심사청구료 감면 신청시 감면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안제10조의4)
 - *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고 ‘특허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사본’을 이용하는 취지만 기재하여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도 심사청구료를 감면

○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수령시 설정등록료 감면(안 제7조)

- *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사용 활성화를 위해 설정등록시 서면으로 발급되는 등록증 대신 전자파일 형태의 등록증을 발급하면 설정등록료 납부시 1만원을 감면

○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수수료 납부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안 제8조)

-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무일로서 금융기관은 휴무일에 해당

- 연차등록료 감면대상에 '개인'의 감면요건 명확화 (안 제7조)

- * (현행) 출원인과 발명자·고안자·창작자가 같은 경우→(개정) 출원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가 발명자·고안자·창작자가 같은 경우

-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납부방법에 관한 내용에 맞게 조문 내용을 명확화 (안 제8조)

- * 현행 규정(제8조제7항제1호)은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납부방법에 관한 내용임에도 '상표등록료'로 표현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상표권의 설정등록료(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분할납부 후에 상표권이 분할(또는 분할이전)된 경우, 각 상표권의 2회차 등록료를 설정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 5년내 납부하도록 납부방법을 명확화 (안 제8조)

3. 향후 일정

○ 부처 협의(12월~1월)→입법예고(1월)→법제처 심사(2월~3월)→공포·시행(4월)